의 안 번 호	제 221 호			
의 결	2023			
연 월 일	(제 회)			

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· 운영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 정 일 의원 등 7인					
발의연월일	2023년 3월 3일					

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안 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1 발의연월일: 2023년 3월 3일

발 의 자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,
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,

유상용

1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, 도내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
- O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(안 제3조)
- O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 규정(안 제4조)
- O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규정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- 호

다. 협 의 : 양성평등가족정책관

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· 운영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청소년단체"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「청소년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)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 단체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협의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.
 -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협의회의 사무소는 청소년단체에 둘 수 있다.
- 제4조(협의회의 사업 등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협의회 회원인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
- 2.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
- 3.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 · 연구
- 4. 우수회원단체,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
- 5.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- 6.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
- 7.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- 제5조(협조 및 지원) 협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청소년 기본법

- 제40조(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)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 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- 1.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
 - 2.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
 - 3.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
 - 4.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
 - 5. 남・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・지원
 - 6.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·연구·지원
 - 7.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
 - 8.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
 - 9.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
 - 10.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- ⑦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있다.
-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41조(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)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 간 협력 및 교류와 지원
- O (사업내용)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, 청소면 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·연구,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

2. 비용 발생 요인

O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가 도내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운영·발 전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사업비 등

3. 관련조문

O 안 제4조(시설협회의 사업 등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'22년 사업 기준 및 청 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업 추계

나. 추계 결과

- 연간 7,000천원, 향후 5년간 35,000천원 소요
 - ·청소년 정책연구 세미나 : 3,000천원×1식 = 3,000천원
 - ·청소년 단체활동 대내외 홍보: 2,000천원×1식 = 2,000천원
 - · 전국 청소년단체 전문연수 참여: 10명×20만원 = 2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X	출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35,000
청소	:년 정책연구 세미나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15.000
1	년 단체활동 내외 홍보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.000
	청소년단체 근연수 참가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.000
,	재원 조달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35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35,000
	지방세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35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	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	
)	시・군비						
(차	기 타 입금, 민자, 비비 등)						